#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의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 2023년 8월 29일

O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3. 제정이유

O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예술 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인 차워에서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O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O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O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O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O 실태조사, 홍보,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 5. 검토의견

# 가. 제정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 청년 인구는 지역 내 유입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수가 더 많고, 충북 역시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내 청년 예술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북 예술인은 타 지역 대비 소득이 낮고,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활동 수행이 축소 및 단절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늘어났음. 특히 기성 예술인과 비교해 경력이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 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2)
-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북 예술인은 총 3,129명이고, 그중 2, 30대 청년 예술인은 1,096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 《 충북 청년 예술인 현황》

| 구분    |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인원(명) | 3,129 | 441 | 655 | 454  | 570  | 631  | 303 | 75  |
| 비율(%) | 100   | 14  | 21  | 14.6 | 18.2 | 20.1 | 9.7 | 2.4 |

※자료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완료자(2023, 8, 29, 기준)

<sup>1) &</sup>quot;충북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심화", 충청타임즈(2022. 6. 14.)

<sup>&</sup>quot;충북청년 유출방지 대책부터 세워라", 충북일보(2022. 6. 29.)

<sup>&</sup>quot;직업 때문에…충북 떠나는 청년들", 충청매일(2021. 12. 30.)

<sup>2) 『2021</sup>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충북문화재단(2022. 3.) 221면, 243면

- 기존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21. 2. 10. 제정)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예술인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년 예술인에 특화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부족함.
- 본 조례안과 비교 시 "청년 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 창작공간 제공, 창업 등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아 청년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충북 문화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도내 청년 예술 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 고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충북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O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 예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8곳임(서울, 경남, 광주, 전남, 제주, 경기, 대구, 인천).

#### 《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 지역 | 조 례 명                       | 제정일        |
|---|----|-----------------------------|------------|
| 1 | 서울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1-03-25 |
| 2 | 경남 |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04-01 |
| 3 | 광주 |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1-12-15 |
| 4 | 전남 |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1-12-30 |
| 5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1-12-31 |
| 6 | 경기 |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2-04-21 |
| 7 | 대구 |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2-10-11 |
| 8 | 인천 |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3-02-20 |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아래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 문 | 규 정 사 항        | 조 문  | 규 정 사 항 |
|-----|----------------|------|---------|
| 제1조 | 목적             | 110  | 위탁      |
| 제2조 | 정의(청년, 청년 예술인) | 제7조  | 실태조사    |
|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 제8조  | 홍보      |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포상      |
| 제5조 | 지원 사업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

# ○ 안 제1조(목적)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
 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본 조례안
 의 목적이 있음을 밝힘.

# ○ 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개념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 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청년기본법」제3조³)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과 달리 청년의 범위를 정한 것에 문제가 없음.
- 본 조례안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청년의 범위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현재 충북 내 청년 지원 사업4)의

<sup>3)</sup>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1. &</sup>quot;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sup>4)</sup> 충북청년희망센터(청년광장,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 등)

대상이 도내 39세 이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북 내 통일성 있는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률과 조례 간 연령 범위의 차이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
  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청년 예술인'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 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5)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의미함.
- 향후 인구구조의 현저한 변화 등을 사유로 본 조례안의 육성·지원 대상 인 충북 청년 예술인의 연령을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차후 논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북 내 청년 정책 간 혼선을 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및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상 규정된 청년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정 할 필요가 있겠음.

#### 《 타 시·도 관련 조례상 청년 예술인 연령》

(2023. 8. 29. 기준)

|   | 청년 예술인 연령 범위  | 지 역                    |
|---|---------------|------------------------|
| 1 | 19세 이상 34세 이하 | (3곳) 서울, 경기, 경남        |
| 2 | 19세 이상 39세 이하 | (3곳) 대구, 광주, <b>충북</b> |
| 3 | 18세 이상 39세 이하 | (2곳) 인천, 제주            |
| 4 | 18세 이상 45세 이하 | (1곳) 전남                |

<sup>5)</su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2. &</sup>quot;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 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이는 유사·중복 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청년 예술인의 적절한 조치임.

# ○ 안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청년 예

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사업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안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 안 제6조(위탁)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O 안 제7조(실태조사)

 안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 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또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 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O 안 제8조(홍보)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음.

#### O 안 제9조(포상)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임.

### O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미래세대인 도내 청년 예술인들이 소 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위 조례의 제정으로 기성세대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자립 기반이 미흡한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활동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충북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 제정 및 활성화로 도내 청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하여 청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충북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 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 예술 활성화가 지닌 긍정적인 가치와 역할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 역시 기대되므로 향후 조례안 내용을 비롯한 도내 청년 예술인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절차적인 면에 있어 집행부 협의를 거치고, 조례안 예고 결과 달리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도 없는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음.

붙 임: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